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제1항제1호 중 “매매종사원에 대한”을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매종사원에 대한”을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43조의2 및 제1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폐차사원증의 관리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라 한다)로부터 별표 28의2에 따른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폐차사원증을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3(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을 대상으로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수행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 대상 폐차종사원을 대상으로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수행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안전 해체 및 재활용 관리
3. 폐차, 말소절차 및 고객 응대
4. 자동차폐차 관련 전산처리 방법

별표 2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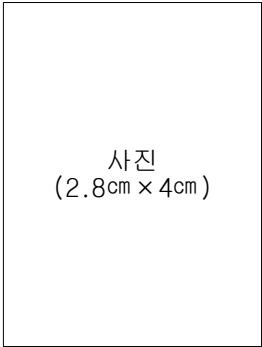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폐차사원증 (제114조의2제1항 관련)

(앞쪽)

(뒤쪽)

자동차폐차사원증  사진 (2.8cm × 4cm) 성명 표기 업체명 표기	사원증 번호 : 유효기간 : 업체명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장 주소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종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표기 발급기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인)
--	--

54mm×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또는 플라스틱)

54mm×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또는 플라스틱)

주) 자동차폐차사원증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고, 제1호의 글자체는 헤드라인체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글자체는 굴림체로 표시하며, 앞면 성명 표기의 크기는 15포인트로, 업체명 표기의 크기는 13포인트로, 글자체는 헤드라인체로 표시하고 뒷면 발급일자 표기의 크기는 9포인트로, 글자체는 굴림체로 표시한다.

명 칭	크 기	명 칭	크 기	명 칭	크 기
1. 자동차폐차사원증	15 포인트	4. 업체명	9 포인트	7. 사업장주소	9 포인트
2. 사원증 번호	9 포인트	5. 성명	9 포인트	8. 문구	8 포인트
3. 유효기간	9 포인트	6. 생년월일	9 포인트	9. 발급기관	9 포인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 ----- ----- -----.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u>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u>	1. ----- <u>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수행하는 --</u> --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u>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u>	2. ----- ----- ----- <u>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수행하는 -----</u>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143조의2(폐차사원증의 관리등)</u> ① <u>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라 한다)로부터 별표 28의2에 따른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폐차</u>

<신 설>

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자동차해
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폐차
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
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
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
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3조의3(폐차종사원에 대한 교
육) ①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을 대상으로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수행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 대상 폐차종사원을 대상으로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수행하는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안전 해체 및 재활용 관리

3. 폐차, 말소절차 및 고객 응대

4. 자동차폐차 관련 전산처리 방법